

발주기관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

[요약본]

2021. 12.

2021년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연구

예 정 원 가 조 사 보 고 서

요 약 본

2021.12

사단법인 **미래신업정책연구소**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용역에 있어서 환경질 측정분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전의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정기준”에서는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에서 제시하는 측정분석수수료를 기준으로 측정대행비용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수수료는 2015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환경질 측정 분석비는 관계법령에 고시한 비용을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장이 해당 항목의 시장 가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지만, 현재 관계법령에 고시한 내용이 없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발주기관에서는 발표한지 5~6년이 경과한 2015년도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의 측정분석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가의 측정비용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등 용역을 발주받은 환경영향평가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환경질 측정의 거짓·부실 사례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인증을 받고 측정분석수수료 원가분석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사)한국경제산업연구소에 의뢰하여 환경질 측정분석에 필요한 직접인건비와 시설비·재료비·전력비·공인인증시험비·감가상각비 등 직접경비에 대하여 시장조사에 기반한 원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많은 발주기관들의 걱정한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한국경제산업연구소 참여 연구진과 보고서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많은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 발주기관 관계자,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회장님 및 관계자, 기타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 12.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박민대



목 차

I. 예정원가조사결과 -----	1
II. 원가조사의 개요 -----	3
III. 원가비목별계산기준 -----	6
IV. 측정분석비 계산결과 -----	10

I . 예정원가조사결과(요약본)

I. 예정원가조사결과(요약본)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귀중

우리 연구소는 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위촉에 의하여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요약본)"에 대한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원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연구소는 귀 협회에서 제시한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항목 및 관련자료를 근거로하여 일반적인 원가계산기준과 절차, 그리고 시장조사를 통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분석항목 -

분 야	세 부 분 야	측정항목	단위	금 액	비고
1. 대기환경분야	1) 환경기준	10개 항목	식	별첨참조	
	2) 보건기준	28개 항목	"	"	
2. 물환경분야	1) 환경기준	31개 항목	"	"	
	2) 지하수수질기준	20개 항목	"	"	
	3) 하천퇴적토	12개 항목	"	"	
3. 해양환경분야	1) 해양수질	36개 항목	"	"	
	2) 해저퇴적토	21개 항목	"	"	
4. 소음진동분야	1) 소음·진동	5개 항목	"	"	
5. 실내공기질분야	1) 실내공기질	15개 항목	"	"	
6. 악취분야	1) 악취	20개 항목	"	"	

2021. 12.

산업한국산업경제연구소

이 사 장 장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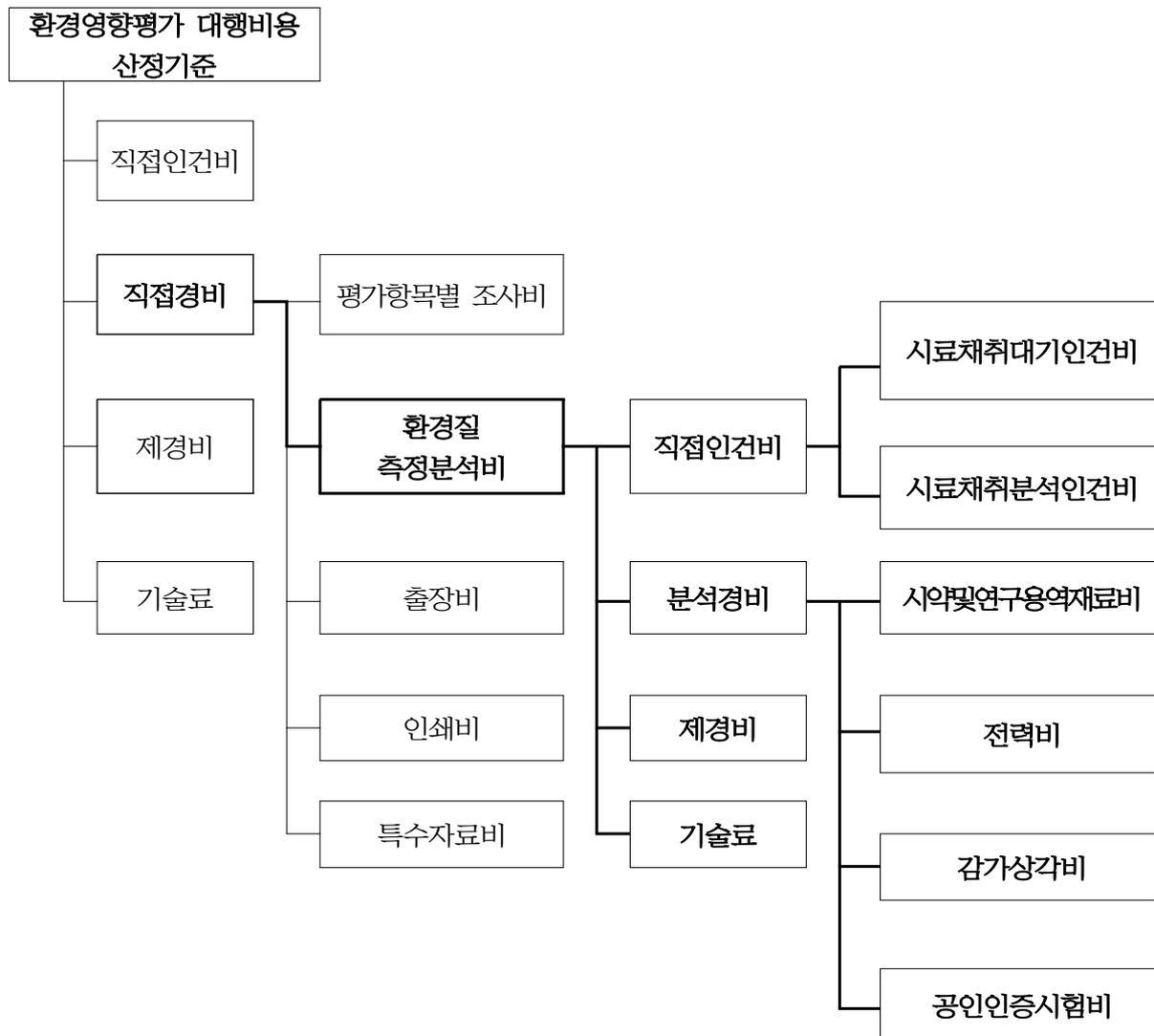
Ⅱ. 원가조사의 개요

Ⅱ. 원가조사의 개요

1. 원가조사의 목적

본 원가조사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위촉에 의거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 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에 대한 원가조사를 한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10.26.)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서 작성을 위한 대행비용으로 예정가격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환경질측정분석비의 위계 및 구성



3. 원가조사의 방법

본 원가조사는 시장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와 원가계산기준 등의 원가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1) 시장조사

시장조사는 원가분석을 하기 위한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에 대한 기초자료의 조사, 확보 및 검토 등으로 조사시점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질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측정대행기관의 운영시스템(행정관리, 정도검사, 출장, 일비지급 등)과 조사시스템(시료 채취 준비-현장으로 이동-현장 시료채취-회사로 이동-실험실 분석-결과정리)에 대하여 조사표본인 측정대행기관을 방문조사, 현장조사 및 유선조사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원가분석

원가분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4호, 2020.12.28)]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제2021-137호, 2021.07.29)을 준용하여 작성된 예정가격(Predetermined cost)으로서 추정원가(Estimated cost) 계산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Ⅲ. 원가비목별계산기준

Ⅲ. 원가비목별계산기준

A. 계산기준

1. 조사대기인건비

○ 1일 조사가능지점 기준으로 준비, 이동 투입인력에 대한 비용 적용

- 투입시간 : 150km를 왕복 소요시간(5시간) 적용

※ 출장거리는 서울~대전 간의 거리 150km로 임의로 선정

- 노임단가 : “20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환경분야 노임단가”중 초급·중급 노임의 평균값 적용

등급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월임금	367,057	281,068	253,264	207,859	190,246

※ 측정분석분야의 업무 특성상 초급, 중급기술자의 수요가 높음

· 1회 조사가능지점

대기분야	물, 해양, 악취분야	소음진동분야
○ 3개지점	○ 5개 지점	○ 4개지점

※ 참조-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2014년 대비 평균 19.4% 상승)

등급		평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단가	2014년	000,000	249,900	208,973	181,229	140,862
	2020년	233,109	281,068	253,264	207,859	190,246
상승율		19.4%	12.5%	21.2%	14.7%	35.1%

- 제경비 : 인건비의 110% 적용

- 기술료 : (인건비+ 제경비)의 20%를 적용

○ 적용원가 : 313,500원

A. 노임단가(일)	B. 인건비	C. 제경비	D. 기술료	시료채취 인건비
199,053 [(207,859+190,246)/2]	124,408 [A/8×5]	136,849 [B×110%]	52,251 [(B+C)×20%]	313,500 (B+C+D)

2. 측정분석비(별첨 참조)

○ 측정·분석 투입인력의 인건비와 장비관리 및 분석에 필요한 경비적용

1) 인건비

- 투입시간 : 측정, 분석공정별 투입기술인력의 소요시간 적용
- 노임단가 : '20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환경분야 노임단가 적용

2) 경비 : 시약 및 재료비, 전력비, 감가상각비, 공인인증시험비로 구성

- 시약 및 재료비 : 초지류, 배지류, 측정분석기소모품 및 기타소모품 등
 - 단위(건)당 소요량은 항목별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측정대행기관의 실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출
 - 구입단가는 환경측정협회 자료, 물가조사자료, 실제 구입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
- 전력비 : 측정·분석기기의 단위(건)당 가동시간에 전력소비량을 적용
 - 적용단가 : 한국전력공사 고시요금인 kwh당 전력요금
- 감가상각비 : 측정·분석기기의 구입단가를 총 측정·분석건수로 나눔
 - 측정·분석기기의 내용년수와 단위(건)당 가동시간을 토대로 기기가동 기간동안 총 측정·분석건수를 산정
 - 기기구입단가는 시약 및 재료비 구입단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 공인인증시험비 (정도검사수수료) : 분석기관의 연간 정도검사비용을 연간시험가능건수로 나누어 산출

3)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를 적용

4)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를 적용

B. 물가변동에 따른 수수료 조정방안

1.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수수료로 결정할 때에는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와 물가변동에서 오는 경비지출액 추가부담액이 수수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수료의 조정이 필요함.
2. 이러한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의 조정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실질적인 사업비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되어야 하지만, 3년 또는 5년의 주기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3. 수수료조정 방안을 1) 표준원가산출 기준에 따라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 조정과 2) 인건비와 물가상승률만을 기준으로 수수료 조정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1) 조정방안 1

수수료가 결정되는 원가항목은 인건비, 경비, 재료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으로 모든 인자를 조정시점의 업무환경에 맞게 분석할 수 있도록 표준원가산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조정함

2) 조정방안 2

수수료를 구성하는 원가항목을 크게 인건비와 경비로 분류하여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하고 경비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각 분석항목 및 비목별로 그 증감률만큼 수수료를 조정함

※ 환경부문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 및 소비자물가지수 상승(2015년 대비 2021년)

(단위 : 원)

구 분	환경부문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			소비자물가지수 (CPI)			비 고
	2016년	2021년	상승률 (%)	2015년 1분기	2021년 1분기	상승률 (%)	
고급기술자	204,180	253,264	124.03				
중급기술자	183,703	207,859	113.14				
초급기술자	150,977	190,246	126.00				
기타서비스지수				99.48	127.79	128.45	

주 1) 환경부문 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는 2016년 개정으로 2016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함.

2) 기타서비스지수는 한국은행공표 소비자물가지수중 기타서비스부문(각종 수수료 등) 적용

IV. 측정분석비 계산결과

※ 별첨

IV. 측정분석비 계산결과

구 분	측 정 항 목		단위	2021년 단가	비 고
1. 대기환경분야	1)	환경기준			
		(1) 아황산가스	건당	121,900	
		(2) 이산화질소	"	111,300	
		(3) 벤젠	"	180,000	
		(4) 미세먼지(PM-10)	"	111,900	
		(5) 초미세먼지(PM-2.5)	"	123,300	
		(6) 일산화탄소(CO)	"	60,400	
		(7) 오존(O3)	"	137,400	
		(8) 납(Pb)	"	120,500	
		(9) 자동연속측정(SO2,CO,NO2,PM-10,PM-2.5,O3등 6항목이하 1일기준)	"	919,000	
		(10) 자동연속측정(PM-10,PM-2.5,NOx 등 3항목이하 1일기준)	"	681,100	
1. 대기환경분야	2)	보건분야			
		(1) 수은(Hg)	건당	184,800	
		(2) 포름알데히드(HCHO)	"	114,900	
		(3) 카드뮴	"	128,600	
		(4) 6가크롬	"	128,600	
		(5) 니켈	"	128,600	
		(6) 베릴륨	"	128,600	
		(7) 비소(As)	"	145,100	
		(8) 염화비닐(VC)	"	93,200	
		(9) 에틸벤젠(C8H10)	"	93,200	
		(10) n-헥산	"	93,200	
		(11) 시클로헥산(C6H12)	"	93,200	
		(12) 1,2-디클로로에탄(C2H4Cl2)	"	93,200	
		(13) 클로로포름(CHCl3)	"	93,200	
		(14)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93,200	

구 분	측 정 항 목		단위	2021년 단가	비 고	
1. 대기환경분야	2)	(15)	사염화탄소(CC14)	"	93,200	
		(16)	암모니아(NH3)	"	75,500	
		(17)	황화수소(H2S)	"	142,600	
		(18)	시아나화수소	"	91,100	
		(19)	염화수소(HCl)	"	63,600	
		(20)	벤젠(C6H6)	"	178,800	
		(21)	스티렌	"	178,800	
		(22)	복합악취	"	165,100	
		(23)	아세트알데히드	"	110,000	
		(24)	톨루엔	"	178,800	
		(25)	자일렌	"	178,500	
		(26)	m-자일렌	"	178,800	
		(27)	먼지	"	210,000	
		(28)	THC	"	89,300	
2. 물환경분야	1)		사람건강보호기준, 생활환경기준			
		(1)	수소이온농도(PH)	건당	9,700	
		(2)	용존산소(DO)	"	8,400	
		(3)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	53,200	
		(4)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망간산칼륨법	"	33,800	
		(5)	부유물질(SS)	"	15,900	
		(6)	시아나(CN)	"	54,700	
		(7)	비소(As)	"	60,300	
		(8)	수은(Hg)	"	50,400	
		(9)	유기인	"	116,800	
		(10)	총인(T-P), 용존총인(DTP)	"	18,400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229,800	
		(12)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148,300	
		(13)	6가크롬	"	39,900	
		(14)	카드뮴	"	37,600	
		(15)	납	"	37,600	

구 분	측 정 항 목		단위	2021년 단가	비 고
2. 물환경분야	1)	(16) 총질소(T-N), 용존총질소(DTN)	"	18,900	
		(17)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49,500	
		(18) 클로로펠a	"	16,500	
		(19) 총대장균군(시험관법)	"	53,100	
		(20) 1,2-디클로로에탄	"	122,200	
		(21) 클로로포름	"	122,500	
		(22) 1,4-다이옥산	"	91,400	
		(23)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92,200	
		(24) 사염화탄소	"	118,400	
		(25) 디클로로메탄	"	121,300	
		(26) 벤젠	"	118,400	
		(27) 안티몬	"	63,200	
		(28) 분원성 대장균군	"	42,100	
		(29) 총유기탄소(TOC)	"	60,300	
		(30) 포름알데히드	"	80,500	
(31) 헥사클로로벤젠	"	87,400			
2. 물환경분야	2)	지하수수질기준(용수)			
		(1) 수소이온농도(PH)	건당	9,700	
		(2) 시안(CN)	"	54,700	
		(3) 페놀류	"	40,900	
		(4) 비소(As)	"	60,300	
		(5) 수은(Hg)	"	50,400	
		(6)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148,300	
		(7)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148,300	
		(8) 카드뮴	"	63,400	
		(9) 납	"	63,400	
		(10) 크롬	"	63,400	
		(11) 염소이온(Cl-)	"	25,600	

구 분	측 정 항 목		단위	2021년 단가	비 고	
2. 물환경분야	2)	(12)	질산성 질소(NO3-N)	"	28,900	
		(13)	총대장균군(평판집락법)	"	31,900	
		(14)	다이아지논	"	102,600	
		(15)	파라티온	"	102,000	
		(16)	1.1.1.-트리클로로에탄	"	121,600	
		(17)	벤젠	"	118,400	
		(18)	톨루엔	"	121,200	
		(19)	에틸벤젠	"	121,200	
		(20)	크실렌	"	121,200	
2. 물환경분야	3)		하천퇴적토			
		(1)	입도	건당	130,500	
		(2)	함수율	건당	14,600	
		(3)	화학적산소요구량	건당	37,900	
		(4)	유기탄소량	건당	61,400	
		(5)	구리,납,니켈,아연,알루미늄,카드뮴,크롬	건당	63,400	
		(6)	비소(As)	건당	65,800	
		(7)	수은(Hg)	건당	71,700	
		(8)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건당	306,500	
		(9)	리튬	건당	63,400	
		(10)	총질소	건당	26,600	
(11)	총인	건당	41,900			
3.해양환경분야	1)		해양수질			
		(1)	수소이온농도(PH)	건당	14,400	
		(2)	화학적산소요구량	"	40,200	
		(3)	용존산소량	"	19,600	
		(4)	총대장균군	"	44,300	
		(5)	용매추출유분	건당	19,300	
		(6)	총질소	"	45,000	

구 분	측 정 항 목		단위	2021년 단가	비 고
3.해양환경분야	1)	(7) 총인	"	41,800	
		(8) 6가크롬(Cr ⁺⁶)	"	85,500	
		(9) 비소(As)	"	79,400	
		(10) 카드뮴(Cd)	"	85,500	
		(11) 납(Pb)	"	85,500	
		(12) 아연(Zn)	"	85,500	
		(13) 구리(Cu)	"	85,500	
		(14) 시안(CN)	"	88,000	
		(15) 수은(Hg)	"	87,100	
		(1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227,700	
		(17) 다이아지논	"	113,700	
		(18) 파라티온	"	114,200	
		(19) 말라티온	"	113,300	
		(20) 1.1.1-트리클로로에탄	"	121,800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21,800	
		(22) 트리클로로에틸렌	"	86,900	
		(23) 디클로로메탄	"	86,900	
		(24) 벤 젠	"	86,900	
		(25) 페 놀	"	70,700	
		(26)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115,900	
		(27) 니켈	"	85,500	
		(28) 수은	"	85,500	
		(29) 염분	"	85,500	
		(30) 총유기탄소량	"	60,300	
		(31) 부유물질량	"	15,900	
		(32) 투명도	"	71,200	
		(33) 철	"	85,500	
		(34) 망간	"	85,500	

구 분	측 정 항 목		단위	2021년 단가	비 고
3.해양환경분야	1)	(35) 알루미늄	"	85,500	
		(36) 유기인	"	113,700	
3.해양환경분야	2)	해저퇴적물			
		(1) 입도	건당	130,500	
		(2) 함수율	"	14,600	
		(3) 강열감량	"	20,200	
		(4) 산취발성황화물(AVS)	"	20,400	
		(5)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건당	37,900	
		(6) 유기탄소량	"	61,700	
		(7) 구리	"	63,400	
		(8) 납	"	63,400	
		(9) 니켈	"	63,400	
		(10) 아연	"	63,400	
		(11) 알루미늄	"	63,400	
		(12) 철	"	63,400	
		(13) 카드뮴		63,400	
		(14) 코발트		63,400	
		(15) 크롬		63,400	
		(16) 비소(As)	"	66,000	
		(17) 수은(Hg)	"	74,800	
		(18)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	302,300	
		(19)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	262,200	
		(20) 시안	"	54,700	
(21) 유기인	"	160,600			
4. 소음·진동분야		(1) 소음(환경기준)	지점당	365,900	
		(2) 진동(환경기준)	"	271,000	
		(3) 철도소음	"	412,000	
		(4) 철도진동	"	441,700	

구 분	측 정 항 목		단위	2021년 단가	비 고
4. 소음·진동분야	(5)	항공기소음(7일연속측정)	"	10,245,700	
5. 실내공기질분야	(1)	미세먼지(PM-10)	지점당	84,300	
	(2)	초미세먼지(PM-2.5)	"	84,300	
	(3)	이산화탄소(CO ₂)	"	51,100	
	(4)	포름알데히드(HCHO) - 신축공동주택	지점당	183,700	
	(5)	포름알데히드(HCHO) - 다중이용시설	"	160,800	
	(6)	총부유세균	"	111,100	
	(7)	일산화탄소(CO)	"	52,900	
	(8)	이산화질소(NO ₂)	"	53,000	
	(9)	휘발성유기화합물(VOC _s) - 신축공동주택	"	229,400	
	(10)	휘발성유기화합물(VOC _s) - 다중이용시설	"	214,400	
	(11)	석면(Asbestos)	"	136,000	
	(12)	오존(O ₃)	"	54,900	
	(13)	라돈 - 단기측정	"	80,500	
	(14)	라돈 - 장기측정	"	184,800	
	(15)	부유곰팡이	"	111,100	
6. 악취분야	1)				
	(1)	복합악취	건당	165,100	
	(2)	암모니아	"	74,900	
	(3)	메틸머캅탄, 황화수소, 다이메틸 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항목당	142,600	
	(4)	트라이메틸아민	건당	124,900	
	(5)	아세트알데하이드	"	110,000	
	(6)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110,000	
	(7)	뷰티르알데하이드	"	110,000	
	(8)	n-발레르알데하이드	"	110,000	
	(9)	iso-발레르알데하이드	"	110,000	
	(10)	스타이렌	"	104,900	
	(11)	톨루엔	"	113,400	
	(12)	자일렌	"	113,400	

구 분	측 정 항 목		단위	2021년 단가	비 고
6. 악취분야	1)	(13) 메틸에틸케톤	"	108,300	
		(14) 메틸아이스부티르케톤	건당	108,300	
		(15) 뷰티르아세테이트	"	108,300	
		(16) 프로피온산	"	108,800	
		(17) n-발레르산	"	108,800	
		(18) n-뷰티르산	건당	108,800	
		(19) i-발레르산	"	108,800	
		(20) i-뷰티르알코올	"	108,700	
7. 시료채취대기인건비		1. 대기분야 : 1인(1일/3지점)	3지점	313,500	
		2. 물, 해양, 악취 분야 : 1인(1일/5지점)	5지점	313,500	
		3. 소음진동 분야 : 1인(1일/4지점)	4지점	313,500	

주 1) 부가가치세(10%) 별도임.

2) 시료채취대기인건비(대기의 의미는 시료채취를 위해 투입되는 조사원의 현장이동(출발 및 복귀)에 소요되는 대기시간임) 계상기준

(1) 1일당 가능 기준지점 계상기준 : 대기분야(1인/3지점), 물,해양,악취분야(1인/5지점), 소음진동분야(1인/4지점기준)

(2) 각 분야별 1일당 기준지점 초과시 분야별 기준단가의 배수계상 적용함

(3) 대기, 소음진동 분야는 1박2일 기준으로 일비, 숙박비, 여비 등은 별도로 실비계상기준임.

(4) 물,해양,악취분야 등은 1일 기준으로 일비, 여비 등 별도로 실비계상기준임.

3) 소음(환경기준) : 측정을 주간(4회)/야간(2회)로 달리하는 경우 지점당수수료에 주간(65%), 야간(3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4) 진동(환경기준) : 측정을 주간(2회)/야간(1회)로 달리하는 경우 지점당수수료에 주간(65%), 야간(3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5)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는 유사항목 또는 시험방법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함.

6) 연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운임 등, 불가피한 현지 체류 일수에 따른 출장비 등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